



제297회 임시회
2011.01.21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3월 15일
- 승계일자 : 2010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- 학원의 심야 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,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 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유치원생·초등학생·중학생은 밤 11시,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여 통일시키고자 함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(구)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010.3.22. 제238회 임시회 심의결과 『학생들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인 고액과외 및 불법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여지와 자율학습권 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』이 있어,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어 계류 중에, 동년 9월 1일 (구)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됨.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학교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유치원생·초등학생·중학생은 밤 11시,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제한 하고자 하는 것임.
- 도내 초·중·고 학생 및 학부모, 교원, 운영위원 등 총 21,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.(2009.10.23.~11.5. 도교육청 조사)

구 분	응답자수	찬 성		반 대	
		인원	비율	인원	비율
전체평균	21,556	14,598	67.7%	6,958	32.3%
학 생	11,189	6,984	62.4%	4,205	37.6%
학부모	8,634	6,204	71.9%	2,430	28.1%
교원	1,014	822	81.1%	192	18.9%
운영위원	719	588	81.8%	131	18.2%

- 금번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, 청소년 심야 유해환경 및 각종범죄로부터 보호,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생각됨.

- 다만,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고액 비밀과외와 학원 운영의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이 필요하며, 또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학원, 교습소, 교육청 등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제16조 (지도·감독 등)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